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6
----------	-----

제출연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이 2004. 9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영장을 관리 하고자 하며,
- 1995. 3. 1일자로 폐교된 충주시 종민동 510-3에 위치한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장 부지에 교직원의 연찬활동,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관을 추가함.(안 제2조)
- 나.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운영 현실에 맞게 간소화 하고 학생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수영장 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4호)
- 다. 각종대회 및 행사 등 수영장 시설·설비의 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다이빙장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스킨스쿠버와 다이빙장 일반사용자로 구분 징수함.(안 제26조)
- 라. 사용료 반환 기준을 수영장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28조제3호)
- 마. 복지회관사용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퇴직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기관) 및 일반인은 관장이 허가한 자로 함. (안 제37조)

- 바. 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은 별지 제 4호 내지 제 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5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함.(안 제38조)
- 사.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액을 별표 4와 같이 정함.(안 제39조)
- 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안 제39조의1)
- 자.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함.(안 제40조)
- 차.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물품의 훼손·분실시 사용자가 변상 하여야 함.(안 제41조)
- 카.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함(안 제42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기 타 : 입법예고(2005. 05. 13 ~ 06. 02) 결과, 특이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중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를 “지역교육청 소속 교직원복지회 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증 또는 사용권을 교부 받아 사용 한다.

4.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26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월회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한때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제43조 내지 제46조로 하며, 제7장(제37조 내지 42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복지회관

제37조(사용대상) 복지회관 사용대상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퇴직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기관) 및 일반인은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지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시설의 사용) ①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료) ①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4와 같다.

제39조의1(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사용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2.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및 이에 근거한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4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회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2조(재정)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27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26조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회관	공 연 장	50,000원	○ 전시설 사용기간 4월 ~ 10월(09:00 ~ 20:00) 11월 ~ 3월(09:00 ~ 18:00) ○ 기준시간 초과사용할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장 당	75,000원			
	전시설 (내부)	20,000원			
	전시설 (외부)	10,000원			
	부속설비	피아노		10,000원	
		프로젝터		30,000원	
		난 방		실사용량	
		냉 방		전기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조명(전기)		전기사용기본요금× 1/30+실사용량	
	수영장 (경영폴장)	일일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수영장 (다이빙장)	일일입장	스킨스쿠버	10,000원	
			초등학생이하	2,5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일반인	4,000원	
		월회원	스킨스쿠버	170,000원	
			초등학생이하	50,000원	
			중·고등학생	55,000원	
			일반인	70,000원	
		단체입장	스킨스쿠버	7,000원	
초등학생이하			2,0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일반인	3,500원				
수영장 (전용)	경영폴장(시간당)	200,000원	○ 일·공휴일 및 야간사용(동계 17:00 이후 하계 18:00이후)시 시간당 30%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월회비 3월이상 선납자는 해당기간 면제		
	다이빙장(시간당)	100,000원			
	개인사물함(월)	3,000원			

기관명	사 용 구 분		정 수 액	비 고	
제 천 학생회관	롤 러 스케이트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초과 적용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공 통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다지탈자료실)	후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3-B4	360원	"	
		A4-B5	180원	"	

【별표 4】

□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39조 관련)

○ 객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비 고
11평형	10,000	2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2:00를 기준으로 함
22평형	20,000	30,000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비 고
시설사용료	무료	50,000	○ 1일 기준(단체) ○ 100명 초과 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 냉·난방비 별도실비 적용 *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등

【별지 제4호 서식】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개인용)				
신 청 인	소 속 기 관 명		자 택 주 소	
	(☎: FAX)		(☎: HP:)	
	직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차량번호
동 행 인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 소 또는 근무처	
사용희망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희망실수	11평형(4인용)	22평형		※ 메 모 란
		10인용	25인용	
	실	실	실	
<p>복지회관사용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위와 같이 복지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직 성명 (인)</p> <p>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장 귀하</p>				

【별지 제6호 서식】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함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함

1. 기관·단체명(개인의 경우는 소속기관명) :
2. 사용인원 : 대표자 의 명
3. 사용희망시설 및 기간

객 실	11평형	22평형		계
		10인용	25인용	
	실	실	실	실
일반시설	□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		□ 세미나실 ()	※ 회당란에 “○”표 기재
	□ 분임토의실 ()		□ 체력단련실()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까지(박 일)			

4. 허가조건 : 사용료를 납부하고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청복지회관장 (인)

귀하

현행	개정안
<p>1. 도서실 사용자 및 입·퇴관 방법 및 절차</p> <p>2.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p> <p>3.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p> <p>4. <신설></p> <p>제2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p> <p>2. 인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p> <p>3. <신설></p> <p><신설></p> <p><신설></p>	<p>1.</p> <p>2.</p> <p>3.</p> <p>4. <u>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u></p> <p>제28조(사용료의 반환).....</p> <p>.....</p> <p>.....</p> <p>.....</p> <p>1.</p> <p>.....</p> <p>2.</p> <p>.....</p> <p>3. <u>월회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한때</u></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복지회관</p> <p>제37조(사용대상) <u>복지회관 사용대상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퇴직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기관) 및 일반인은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지회관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u></p> <p>제38조(시설의 사용) ①<u>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내지</u></p>

현행	개정안
<p>< 신설 ></p> <p>< 신설 ></p> <p>< 신설 ></p>	<p>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p> <p>제39조(사용료) ①복지회관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4와 같다.</p> <p>제39조의1(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40조(사용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2.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 및 이에 근거한 관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 신설 ></p> <p>< 신설 ></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공동실습소</p> <p>제37조(사용대상) 공동실습소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공동실습소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학생의 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p> <p>제38조(사용제한) 실습소 이용자가 실습 중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소장은 실습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의 실습에 지장을 초래 할 때 2. 실습소 안전수칙을 위한 할 때 3. 기타 실습에 부적합하다고 소장이 판단 될 때 <p>제39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실습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습소의 시설물이나</p>	<p>제4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회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p> <p>제42조(재정)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공동실습소</p> <p>제43조(현행 제37조와 같음)</p> <p>제44조(현행 제38조와 같음)</p> <p>제45조(현행 제39조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제40조(사용료) 일반인이 실습소를 사용 할 경우 실습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p>제46조(현행 제40조와 같음)</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개정 2005.3.24 법률 제7410호)

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 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